

김중연 선생님 「ONE 헌법 기출 700제」 초판 사용자를 위한
정오표① (2019-01-25)

「ONE 헌법 기출 700제(초판)」이 출간 된 후 법령 개정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변경 등으로 본문내용의 수정이 필요하기에 정오표를 별도로 제작하여 배포합니다.

P31 034번 내용변경

① (틀림) 국적법 제7조

국적법 제7조(특별귀화 요건)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제1호의2·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자는 제외한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3.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② (틀림), ⑤ (옳음) 국적법 제6조

국적법 제6조(간이귀화 요건)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사람
-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p33 035번 내용수정

① (틀림)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4호

① (틀림)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4호

국적법 제6조(간이귀화 요건)

-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

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p36 037번 내용수정

- ③ (틀림) 국적법 제6조 제1항 제1호

국적법 제6조(간이귀화 요건)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사람

- ④ (옳음) 국적법 제8조 제1항

국적법 제8조(수반 취득)

- ① 외국인의 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p68 068번 내용 및 정답수정

ㄷ. (틀림, ㄹ. (옳음) [헌재 1999.7.22. 97헌바76] 소급입법은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하도록 하는 진정소급입법과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하도록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나눌 수 있는바,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되는 데 반하여,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 <10 법행> <16 사시>

정답: 068 ⑤

p93~94 090번 내용수정

① (옴음) [대판 2007.12.27. 2007도794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으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 규약 제18조 제1항에는 종교나 신념에 기한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이 문면상 명백하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12 법행>

[현재 2011.8.30. 2008헌가22]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준종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그러나 대체복무제와 관련하여 판례가 변경되었다. 즉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판례에서도 헌법재판소가 과연 양심적 병역거부권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수용될 수 있는지 논의는 있었으나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2018.6.28. 2011헌바379, 2012헌가17] 우리나라가 가입하지 않았지만 일반성을 지닌 국제조약과 국제관습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 기본권헌장과 유럽국가 등 일부국가의 법률 등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존재한다거나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다.

p95 091번 내용수정

① (틀림) [현재 2005.2.3. 2001헌가9] 가족제도에 관한 전통·전통문화는 적어도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 이념인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역사적 전승으로서 오늘의 헌법이념에 반하는 것은 헌법 전문에서 타파의 대상으로 선언한 ‘사회적 폐습’이 될 수 있을지언정 헌법 제9조가 ‘계승·발전’시키라고 한 전통문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원리, 전문, 제9조, 제36조 제1항을 아우르는 조화적 헌법해석이라 할 것이다. 가족제도에 관한 전통·전통문화란 적어도 그것이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이념인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한계가 도출되므로, 전래의 어떤 가족제도가 헌법 제36조 제1항이 요구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한다면 헌법 제9조를 근거로 그 헌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

p160 145번 내용 및 정답수정

④ (틀림)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146 ①

p161 146번 내용수정

① (틀림) 헌법 제118조 제2항

제118조

-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③ (옳음) 지방자치법 제2조 제3항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 2. 시, 군, 구
- ③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p203~204 179번 내용수정

④ (틀림) [헌재 2006.6.29. 2004헌마826] 교도관이 마약류사범에게 같은 성별의 교도관 앞에 돌아서서 하의속옷을 내린 채 상체를 숙이고 양손으로 둔부를 벌려 항문을 보이는 방법으로 실시한 정밀신체검사는 구치소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목적의 정당성), 마약류 등이 항문에 은닉될 경우 촉수검사, 속옷을 벗고 가운을 입은 채 쪼그려 앉았다 서기를 반복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는 은닉물을 찾아내기 어려우며(수단의 적절성), 검사 전에는 검사를 하는 취지와 방법 등을 설명하면서 미리 소지한 반입금지품을 자진 제출하도록 하였으며(최소침해성), 구치소 내의 질서유지 등의 공익이 보다 크므로(법익 균형성),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

p208 183번 내용수정

ㄱ (틀림) 공직선거법 제18조, 헌재 2014.1.28. 2012헌마409 참고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2015.8.13. 법률 제13497호에 의하여 2014.1.28.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함]

p224 195번 내용수정

② (틀림) [헌재 2014.5.29. 2011헌마363]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입양기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다른 사회복지법인과 달리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하여금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게 함으로써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과 그렇지 않은 사회복지법인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제한한다.

p233~234 203번 내용수정

④ (틀림) [헌재 2014.6.26. 2012헌마459]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제외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선출 기반 및 재임 가능성이 모두 투표권자에게 달려 있고, 정해진 임기가 대체로 짧으며, 공무원연금의 전체 기금은 기본적으로 기여금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으로 운용되는 것이므로 공무원연금급여의 종류를 구별하여 기여금 납부를 전제로 하지 않는 급여의 경우 선출직 공무원에게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p242 209번 내용수정

② (옳음) [헌재 2011.2.24. 2008헌바56] 범죄피해자의 고소권은 형사절차상의 법적인 권리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그 나라의 고유한 사법문화와 윤리관, 문화전통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넓은 입법형성권을 갖는다. 가정의 영역에서는 법률의 역할보다 전통적 윤리의 역할이 더 강조되고, 그 윤리에는 인류 공통의 보편적인 윤리와 더불어 그 나라와 사회가 선택하고 축적해 온 고유한 문화전통과 윤리의식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오랜 세월동안 유교적 전통을 받아들이고 체화시켜 이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부분 엄연히 우리의 고유한 의식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효’라는 우리 고유의 전통규범을 수호하기 위하여 비속이 존속을 고소하는 행위의 반윤리성을 억제하고자 이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p247 213번 내용수정

④ (틀림) [헌재 2012.8.23. 2010헌바402] 입법자는 일정한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임신 24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하여(모자보건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태아의 생명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자기낙태죄 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인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위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자기낙태죄 조항이 임신 초기의 낙태나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기낙태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3 번시>

p313 270번 내용수정

라. (ולם) [헌재 2018.6.28. 2011헌바379]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징병제 국가들은 대부분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하여금 비군사적 성격의 공익적 업무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병역의 무의 이행에 갈음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대체복무제라고 한다. ... 국가에게 병역의 무의 면제라는 특혜와 형사처벌이라는 두 개의 선택지밖에 없다면 모르되,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를 조화시킬 수 있는 제3의 길이 있다면 국가는 그 길을 진지하게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p320 276번 내용수정

④ (ולם) [헌재 2006.4.27. 2005헌마1047] 국가의 예산과 공무원이라는 인적 조직에 의하여 운용되는 국립대학에서 선거관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중립적 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하는 것은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3 제1항이 매우 자의적인 것으로서 합리적인 입법한계를 일탈하였거나 대학의 자율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3(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사무의 위탁)

①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 제2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직접선거로 선정하는 경우 해당 대학은 선거관리에 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선거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p329~330 284번 내용 및 정답수정

② (ולם) [헌재 2018.6.28. 2016헌가8] 결국 건강기능식품 기능성광고 심의는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행하는 이 사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광고 사전심의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 이에 따라 종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광고의 사전심의절차를 규정한 구 건강기능식품법 관련조항이 헌법상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헌재 2010.7.29. 2006헌바75의 결정은, 위 결정 취지와 저촉되는 범위 안에서 변경되었다.

정답 284 ①,②

p336 335번 내용수정

ㄷ (틀림) [헌재 2018.6.28. 2016헌가8] 건강기능식품법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심의의 기준, 방법 및 절차 형성의 권한을 식약처장에게

부여하고, 식약처장은 그 표시·광고 심의업무를 건강기능식품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업무위탁을 통하여 민간단체가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를 담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건강기능식품법상으로는 행정기관인 식약처장이 심의업무의 주체이므로, 식약처장은 언제든지 심의업무의 위탁을 철회하고,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전면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 결국 건강기능식품 기능성광고 심의는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행하는 이 사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광고 사전심의를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p338 291번 내용 및 정답수정

③ (틀림) [헌재 2018.6.28. 2016헌가8] 건강기능식품법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심의의 기준, 방법 및 절차 형성의 권한을 식약처장에게 부여하고, 식약처장은 그 표시·광고 심의업무를 건강기능식품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업무위탁을 통하여 민간단체가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를 담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건강기능식품법상으로는 행정기관인 식약처장이 심의업무의 주체이므로, 식약처장은 언제든지 심의업무의 위탁을 철회하고,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전면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 결국 건강기능식품 기능성광고 심의는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행하는 이 사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광고 사전심의를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 이에 따라 종래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헌재 2010.7.29. 2006헌바75의 결정은, 위 결정 취지와 저촉되는 범위 안에서 변경되었다. 폐기된 헌재 결정은 다음과 같다.

정답 291 ③,④

p347 299번 내용수정

① (틀림) [대판 2012.5.24. 2010도11381]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고, 모이는 장소나 사람의 다수에 제한이 있을 수 없으므로, 2인이 모인 집회도 위 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헌재 2009.5.28.2007헌바22] 일반적으로 집회는,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하여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일컬어지고 있고, 그 공동의 목적은 '내적인 유대 관계'로 족하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위와 같은 의미에서 구 집시법상 '집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추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구 집시법상 '집회'의 개념이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 <15 사시> <16 변시>

p353~305 305번 내용 및 정답수정

② (틀림) 종래 누구든지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구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헌재 2009.12.29. 2006헌바20). <13·15 사시> 그러나 이에 대하여 입법 시한을 제시하며,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헌재 2018.5.31. 2013헌바322, 2016헌바354, 2017헌바360·398·471, 2018헌가3·4·9 참조).

정답 305 ②,⑤

p356~357 308번 내용 및 정답수정

⑤ (틀림) 종래 누구든지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구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헌재 2009.12.29. 2006헌바20). <13·15 사시> 그러나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재 2018.5.31. 2013헌바322, 2016헌바354, 2017헌바360·398·471, 2018헌가3·4·9] 국회의 기능을 직접 저해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소규모 집회’, 국회의 업무가 없는 ‘공휴일이나 휴회기 등에 행하여지는 집회’, ‘국회의 활동을 대상으로 한 집회가 아니거나 부차적으로 국회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집회’처럼 옥외집회에 의한 국회의 헌법적 기능이 침해될 가능성이 부인되거나 또는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입법자로서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 가능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그 금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야 한다. ...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은 입법목적 달성을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가능한 집회까지도 이를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308 ④,⑤

p380 328번 내용수정

ㄷ. (틀림) [헌재 2017.12.28. 2015헌마1000] 이 사건 가입조항이 변리사로 하여금 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고서는 변리사로서 활동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청구인의 소극적 결사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p383 330번 내용수정

ㄴ. (틀림) [헌재 2014.1.28. 2011헌바252] 청구인과 같은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원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에 따라 그 등록은 효력을 잃게 되고, 다시 등

록을 하지 않는 이상 학원을 설립·운영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일정한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기본권 주체의 능력과 자질에 따른 제한으로서 이른바 '주관적 요건에 의한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에 해당한다.

ㄹ. (틀림) [헌재 2010.5.27. 2008헌바110] 시험제도란 본질적으로 응시자의 자질과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며, 합격자의 결정을 상대평가(정원제)와 절대평가 중 어느 것에 의할 것인지는 측정방법의 선택의 문제일 뿐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법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정원제를 취한 이유는 상대평가라는 방식을 통하여 응시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정하려는 것이므로 이는 객관적 사유가 아닌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사법시험 정원제는 사회적 수요에 따른 적정한 법조인의 수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다. 한편 절대평가제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정원제(상대평가제)보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반드시 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정원제보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적게 제한할 방법도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무부장관이 합격선발예정인원을 정할 때 법조와 비법조를 망라하여 구성된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을 듣도록 하여 전문성의 수준 및 사회적인 수요를 반영한 적정 합격자 수를 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 제한에 관한 침해최소성 원칙에 부합하며, 나아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불이익이 위와 같은 공익에 비하여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p398 341번 내용수정

④ (틀림) [헌재 2013.7.25. 2012헌바409] 심판대상조항은 공무원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 및 직무의 정상적 운영의 확보, 공무원범죄의 예방, 공직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서 목적이 정당하고,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수뢰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국가공무원을 공직에서 배제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 수뢰죄는 수수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과 연결성을 치명적으로 손상시키고, 직무의 공정성을 해치며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므로 일반 형법상 범죄와 달리 엄격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 수뢰죄를 범하더라도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연퇴직의 사유가 직무 관련 범죄로 한정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이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공무원 개인이 입는 불이익보다 훨씬 크므로 법익균형성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p457 392번 내용 및 정답수정

① (옳음) 종래 헌법재판소는 청원결찰의 근로3권 제한에 대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성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근로3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판례가 변경되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재 2017.9.28. 2015헌마653] 경비업법은 무기를 휴대하고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경비원의 경우에도 쟁의행위를 금지할 뿐이다. 청원경찰은 특정 경비구역에서

근무하며 그 구역의 경비에 필요한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하므로, 청원경찰의 업무가 가지는 공공성이나 사회적 파급력은 군인이나 경찰의 그것과는 비교하여 견주기 어렵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은 군인이나 경찰과 마찬가지로 모든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확일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상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모든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정답 392 모두 옳음

p509~510 435번 내용 및 정답수정

④ (틀림) 헌법 제51조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옳음) [헌재 2000.2.24. 99헌라1] 법치주의의 원리상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과 법률에 기속되므로 국회의 자율권도 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나, 국회의 의사절차나 입법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때에는 자율권 또한 부정되어야 한다. 국회의 회의절차에 관한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서 회의록의 기재내용을 객관적으로 신빙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회의록에 기재된 내용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본문에 현출된 모든 자료와 정황을 종합하여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에 따라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3 변시> <15 사시> <16 법행>

정답 435 ④

p662 573번 내용수정

④ (틀림) 헌법 제89조 제17호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p694~695 604번 내용 및 정답수정

① (틀림) 법원조직법 제3조

법원조직법 제3조(법원의 종류)

① 법원은 다음의 7종류로 한다.

- 1. 대법원
- 2. 고등법원

- 3. 특허법원
- 4. 지방법원
- 5. 가정법원
- 6. 행정법원
- 7. 회생법원

③ (옳음) [헌재 2012.2.23. 2009헌바34] 구 법관징계법 제27조는 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징계 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에 의한 단심재판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독립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관이라는 지위의 특수성과 법관에 대한 징계절차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재판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고, 대법원이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단심으로 재판하는 경우에는 사실확정도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여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의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604 ①

p721 628번 내용수정

③ (틀림) 헌법재판소법 제7조

헌법재판소법 제7조(재판관의 임기)

- ①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p733 638번 내용수정

④ (틀림) [헌재 1995.12.15. 95헌마221] 헌법재판소법이나 행정소송법이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취하와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동의나 그 효력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39조는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준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취하하면 헌법소원심판절차는 종료되며, 헌법재판소로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게 된다. <13 변시>